

[별표 14] <개정 2013.8.6>

용기의 안전점검기준(제25조 관련)

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자가 실시하는 용기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용기의 내면·외면을 점검하여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부식·금·주름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
2. 용기에 도색과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
3. 용기의 스커트에 찌그러짐이 있는지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
4. 유통 중 열 영향을 받았는지를 점검할 것. 열 영향을 받은 용기는 재검사를 할 것
5. 용기캡이 씌워져 있거나 프로텍터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,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용기는 밀봉용캡이 부착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것
6. 재검사기간의 도래 여부를 확인할 것
7. 용기 아랫부분의 부식상태를 확인할 것
8. 밸브의 몸통·충전구나사 및 안전밸브에 사용에 지장을 주는 흠, 주름, 스프링의 부식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
9. 밸브의 그랜드너트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핀 등을 이용하는 등의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
10. 밸브의 개폐 조작이 쉬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
11. 내용적 15L 이하의 용기(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"실내보관 금지" 표시 여부를 확인할 것